



Tax Holiday extension
with Pillar Two impact ^{P1}

New rules on the tax
treatment of Joint
Operation ^{P2}

Tax Holiday 세제 혜택 연장 및 Pillar Two 의 영향

재무부(MoF)는 지정된 선도 산업에 중대한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Tax Holiday 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규정인 재무부 규정 No.PMK-69¹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Tax Holiday 신청은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Tax Holiday의 적용요건 및 혜택은 대부분 기존 규정과 동일하며, 동 신규 규정에서는 Pillar Two 시행과 관련된 신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Tax Holiday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일원으로서 Pillar Two 규정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Global Minimum Tax) 대상이 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세금(Top up Tax)이 부과됩니다.
- 해당 Top up Tax는 PMK-69의 발효일 이전에 Tax Holiday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재무부(MoF)는 현재까지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적격소재국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MK-69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 절차, 행정상의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수도인 "누산타라"(Ibu Kota Negara bernama Nusantara/"IKN") 세제혜택의 일환으로 Tax Holiday를 승인받은 납세자는 동 규정에서 부여하는 Tax Holiday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¹ MoF Regulation No.69 Year 2024 (“PMK-69”) dated and effective from 9 October 2024

- Tax Holiday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서에 국세 완납 증명서(Surat Keterangan Fiskal/"SKF")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규정은 신청자의 국내 주주에 대하여 SKF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동 규정에서는 국내주주에 대해서는 SKF의 보유의무만 규정하고, 제출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기 신청서 제출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모든 신청서는 OSS를 통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 투자 및 생산 실적에 대한 보고는 OSS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Joint Operation의 과세에 대한 신규 규정

재무부(MoF)는 Joint Operation("JO"/Kerja Sama Operasi)의 과세 방식에 관한 규정 No.PMK-79²를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포괄적인 실행규정으로서 최초로 재무부 규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처음으로 PMK 수준에서 포괄적인 시행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PMK-79는 JO를 JO 구성원 간의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 형태로 정의하며, JO 구성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산에 대한 권리와 통제를 보유하거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PMK-79는 JO의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A. JO가 과세등록번호(NPWP) 및 부가세 과세사업자(PKP)로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Admin JO)
 - B. JO가 NPWP 및 PKP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Non-Admin JO)
- A. JO가 과세등록번호(NPWP) 및 부가세 과세사업자(PKP)로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Admin JO)**

1. 요건 및 행정 요구 사항

요건

JO는 계약이나 시행 내용에 JO가 다음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납세자로서 NPWP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 JO가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JO가 수익을 얻는 경우;
- JO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수익을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NPWP 등록 및 PKP 지정에 대한 행정 요구 사항

² MoF Regulation No.79 Year 2024 ("PMK-79") dated and effective from 18 October 2024

NPWP 등록은 JO 소재 지역의 세무서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JO 계약서 또는 JO의 대표 위임 서한에 명시된 인도네시아 내 JO 구성원 중 한 명의 거주지 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등록은 다음 상황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a) JO 계약서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JO 설립 시; 또는
- b) JO 계약서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이 수행된 때.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JO에 대한 PKP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a) JO가 재무부 규정에 따른 소규모 기업 부가세 사업자 등록 면제 매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b) 하나 이상의 JO 구성원이 PKP로 지정된 경우

2. 부가세(VAT)/사치세(LST) 세무처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납부,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은 일반 규정을 따르나, PMK-79는 과세 시점, 과세 표준,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의 흐름에 따른 부가세 인보이스(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JO 구성원 → JO	JO → 고객
과세 시점	JO가 고객에게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JO 계약서상 합의된 기여도에 따른 가치(각 구성원이 제공하는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	일반 VAT 규정 준수
부가세 인보이스 발행	JO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전에 발행하여야 함.	

사치품 공급에 따른 사치세(LST)는 JO가 해당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일회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3. 소득세 처리

JO 과세처리

JO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JO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최종분리과세 대상 소득과 일반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 대상 소득	최종분리과세 대상 소득
손금 산입 여부	일반과세 대상 소득 창출에 대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손금산입됨.	최종분리과세 대상 소득창출에 대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JO 구성원 발생 비용	JO의 사업 관련 비용에 JO 계약서상 약정된 구성원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각 구성원이 제공한 과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JO의 결손금은 JO만 공제받을 수 있음(JO의 구성원이 결손금을 대신 공제받지 못함). 동 결손금에는 JO의 해산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포함됨.	

JO 구성원에 대한과세처리

JO 구성원의 기여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시점에 구성원의 소득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일반과세 대상 소득을 인식하는 JO: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하고, 구성원의 기여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
- 최종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인식하는 JO: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하는 시점.

JO가 JO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세후 이익**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국내 납세자 (Subjek Pajak Dalam Negeri) 또는 고정사업장 ("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또는 원천징수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각 JO 구성원이 연간 소득세 신고서(Annual Income Tax Return, "AITR")에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함; • 고정사업장(PE) 소득이 인도네시아에 재투자 되지 않는 경우 Article 26(4)에 따라 원천징수 됨.
외국 납세자 (Subjek Pajak Luar Negeri)	원천징수세 납부 대상에 해당됨

JO 구성원의 결손금은 JO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JO 구성원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JO 약정 이외에 발생한 소득과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원천징수세 세무처리

JO

- JO 는 일반적으로 수익, 구매/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 연간 소득세 신고서상에 원천징수세 및 자진 납부한 세금은 일반과세 대상 소득분에 대해서는 선납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최종분리 과세 대상 소득분에 대해서는 최종분리과세액으로 사용됩니다.
- JO 가 건설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건설 서비스 규정에 따라 JO 구성원이 적용받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NPWP 를 취득하여야 하는 JO 는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때 일반 원천징수 의무도 부담합니다.

JO 구성원

- 구성원의 기여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JO 로부터 얻은 수익은 원천징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JO 구성원이 외국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Article 26 을 적용하여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최종분리과세 또는 일반과세의 경우도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처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분리과세 금액은 JO 구성원이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물(L&B)의 이전으로 부터 발생하는 최종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L&B 세액은 JO 가 자진 납부 하여야 하며, 동 납부세액은 JO 구성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토지 및 건물의 이전은 L&B 의 매매약정서(*Perjanjian Pengikatan Jual Beli, PPJB*) 체결 및 수정을 포함합니다.

5. 특별 규정 및 경과 규정

JO 가 토지 및 건물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과세 처리

L&B 권리 이전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세액은 세무서로 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며, JO 는 반드시 검증절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JO 는 농업 및 공간 계획부(Ministry of Agrarian Affairs and Spatial Planning)의 토지 및 건물 이전 절차중에 반드시 다음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a) 세금 납부 검증 절차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
- b) 원본 문서에 준하는 JO 계약서 또는 JO 설립 증서 사본.

경과 규정

PMK의 발효일(즉, 2024년 10월 18일) 이전에 이미 NPWP를 보유하고 있으며, PMK-79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JO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a) PMK-79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경우, JO가 소재한 세무서로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b) JO가 PKP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지만, PMK-79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PKP 등록을 위하여 사업내역을 보고합니다;
- c)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1. PMK-79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24년 10월 이후의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세/사치세 징수;
 2. PMK-79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25년 1월 과세 기간부터 원천징수세 납부 의무 준수;
- d) PMK-79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5 과세연도부터 소득세의 계산, 납부 및 신고의무 준수

B. JO가 NPWP 및 PKP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Non-Admin JO)

1. 기준 및 행정 요건

JO 계약서나 시행 내용이 PMK-79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JO는 NPWP를 취득하거나 PKP로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JO 약정과 관련된 세금의 권리 및 의무는 각 JO 구성원이 부담합니다.

2. 부가세(VAT)/사치세(LST) 처리

다음의 사항은 기존 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JO 구성원이 고객에게 VAT/LST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 공급;
- VAT/LST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 공급에 따른 과세시점;
- JO 구성원이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 공급시 과세 표준;
- PKP인 JO 구성원이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를 공급할 때 부가세(VAT) 인보이스 발행 의무;
-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의 취득,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사용, 외국에서 국내로 제공되는 과세 대상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매입 부가세와 관련하여 JO 구성원이 매입부가세 공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JO 구성원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JO 구성원의 VAT/LST의 납부 및 신고의무.

3. 소득세 처리

해당 범주에 속하는 JO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JO 계약에서 합의된 비율에 따라 JO 구성원이 기존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 처리

JO 약정서에 따라 각 JO 구성원이 수행하여 발생하는 수익, 구매/수입 및 수출과 관련한 원천징수세 및 타 당사자에게 지급 시 부담하는 원천징수세는 일반적인 세법규정이 적용됩니다.

5. 경과 규정

해당 PMK의 발효일(즉, 2024년 10월 18일) 이전에 이미 NPWP를 보유하고 있지만 PMK-79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JO는 다음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a) NPWP 취소 신청서의 제출;
- b) JO가 PKP인 경우, NPWP 취소 신청서 제출 및 PKP의 등록 취소 신청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c@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rian Hanif
adrian.hanif@pwc.com

Hisni Jesica
hisni.j.jesic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Irene Satyanagara
irene.satyanagara@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Angeline
angeline.angeline@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de Natawidnyana
made.natawidnyana@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c@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c@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William Christopher
william.christopher@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Novie Mulyono
novie.mulyono@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Esa Perdana
esa.perdana@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4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